

		제외)가 있어도 보수 또는 소득이 없는 경우 부양인정
4. 조부모 이상인 직계존속 - 외조부모이상인 직계존속	○ 부양인정 ○ 부양인정	○ 가입자가 장손인 경우 : 부이상의 남자 직계존속이 없거나, 부이상의 남자 직계존속이 있어도 보수 또는 소득이 없는 경우 부양인정 ○ 가입자가 장손이 아닌 경우 : 조부모 이상인 직계존속의 남자 직계비속이 없거나, 조부모 이상인 직계존속의 남자 직계비속이 있어도 보수 또는 소득이 없는 경우 부양인정 ○ 외조부모 이상인 직계존속의 남자 직계비속이 없거나, 외조부모 이상인 직계존속의 남자 직계비속이 있어도 보수 또는 소득이 없는 경우 부양인정
5. 손이하인 직계비속 - 기혼자인 손녀 - 외손자녀	○ 부가 없거나, 부가 있어도 보수 또는 소득이 없는 경우 부양인정 ○ 부가 없거나, 부가 있어도 보수 또는 소득이 없는 경우 부양인정 ○ 직계존속이 없거나, 직계존속이 있어도 보수 또는 소득이 없는 경우 부양인정	○ 부가 없거나, 부가 있어도 보수 또는 소득이 없는 경우 부양인정 ○ 부양불인정 ○ 부양불인정
6. 직계비속의 배우자(며느리·사위 등)	○ 직계비속이 없거나, 직계비속이 있어도 보수 또는 소득이 없는 경우 부양인정	○ 직계비속이 없거나, 직계비속이 있어도 보수 또는 소득이 없는 경우 부양인정

- 직계비속의 배우자가 남자(사위·손녀사위 등)	○ 직계비속이 없거나, 직계비속이 있어도 보수 또는 소득이 없는 경우 부양인정	○ 부양불인정
7. 배우자의 부모인 직계존속(장인·장모·시부모 등)	○ 부양인정	○ 배우자의 형제·자매가 없거나, 배우자의 형제·자매가 있어도 동거하고 있는 배우자의 형제·자매가 보수 또는 소득이 없는(동거하지 않는 배우자의 형제·자매의 소득요건은 확인하지 아니함)경우 부양인정
8. 배우자의 조부모 이상인 직계존속	○ 배우자의 부가 없거나, 배우자의 부가 있어도 보수 또는 소득이 없는 경우 부양인정	○ 부양불인정
9. 배우자의 직계비속	○ 미혼인 경우 부양인정	○ 부양불인정
10. 형제·자매	○ 미혼으로 부모가 없거나, 미혼으로 부모가 있어도 보수 또는 소득이 없는 경우 부양인정	○ 미혼으로 부모 및 형제·자매가 없거나, 미혼으로 부모 및 형제·자매가 있어도 부모 및 형제·자매와 동거하고 있는 형제·자매가 보수 또는 소득이 없는 경우 부양인정
11. 배우자, 직계존속, 배우자의 직계존속, 직계비속, 직계비속의 배우자, 형제·자매 및 배우자의 직계비속	○ 위 제1호 내지 제10호에 해당되지 아니하더라도 가입자에 의하여 주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음을 공단이 확인한 경우 부양인정	

※ 가입자는 부양요건을 확인받기 위하여 주민등록표등본 1부를 제출하여야 하고, 주민등록표등본으로 가입자와의 관계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호적등본 1부를 제출하여야 합니다.